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김문수・김윤덕・박홍배

박희승 • 윤준병 • 이기헌

이원택 · 이춘석 · 임미애

정동영 · 조인철 · 한병도

허 영·황명선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: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 · 지리적 여건 · 교통 ·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: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,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1항 중 "이유"를 "이유(제2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)"로 한다. 제25조제2항 중 "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"을 "「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"으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	제24조(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
회) ① ~ ⑩ (생 략)	회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	①
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	
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	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	
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<u>이유</u> 및	<u>이유(제</u>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	2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
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	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
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	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포함
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	한다)
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① ~ ⑭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)	제25조(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	2
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	
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	
에서 <u>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</u>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

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한다.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

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

-----.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